

## 결의안 2020-18호

캘리포니아 델라노 시의회 결의안, 단수보호법에 의거한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 중단 방침의 채택 (SB 998)

캘리포니아 건강보호법 116906항은 델라노 시(“시”)를 포함한 도시 및 지역사회 수도시스템에 주거용 서비스 중단 방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며, 그러한 방침에 따라 법에서 규정된 특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에 첨부된 주거용 수도서비스 중단 방침을 증거자료“A”로 채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제 캘리포니아 델라노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상원법안 998호에 의거하여 델라노 시의회는 첨부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방침(“방침”)을 이에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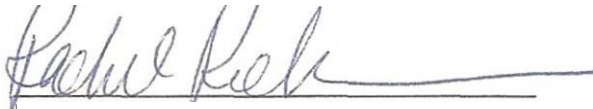
2항: 시 서기는 이 결의안의 채택을 인증한다.

2020년 3월 16일 이것을 채택, 서명, 승인함



LIZ MORRIS (리즈 모리스), 시장

양식을 승인함:



RACHEL RICHMAN (레이첼 리치먼), 시 검사

입증:

본인, 리카르도 G 차베즈, 캘리포니아 델라노 시서기는, 결의안 2020-18호인 전술한 결의안을 2020년 3월 16일에 개최된 델라노 시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시장이 정식 서명하였고 시 서기가 입증하였고, 동일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투표로 채택, 서명, 승인하였다.

찬성: 모리스/알린다하오/아기라/오소리오/바예호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RICARDO G. CHAVEZ (리카르도 G. 차베즈), 시 서기

증거자료 A

수도청구방침: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



## 델라노 시

---

### 수도요금청구 방침: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

1. **목적:** 이 방침은 상원법안998호에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8년 9월 28일 주지사가 승인하였고(캘리포니아 건강보호법 116900항 등) “단수보호법”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은 비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발효일:** 2020년 4월 1일부터 이 방침이 유효하다.
3. **출판 언어:** 이 방침과 이 방침에 따른 통지서는 영어와, 민사법 1632항에 나온 언어인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와 지역구의 서비스지역에 거주하는 최소한 10퍼센트 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 출판되어야 한다.
4.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이전의 요건**
  - A. 고객이 최소한 90일이 체납될 때까지 시정부는 미납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7영업일까지 고객에게 연락하는 적절하고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 B. (A)항에 의거하여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시정부가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 직원은 고객에게 이 방침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시 직원은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 최소요금납부, 미납요금의 할부상환 요청의 절차, 고지서의 재고와 항소 청원 등으로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 C. (A)항에 의거하여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시정부가 연락하는 경우, 체납과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기록상 주소의 고객에게 전달하게 된다. 고객의 주소가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가 아니면,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고, “입주자” 앞으로 보낸다. 통지서에 또렷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다음 내용이 전부 나온다.
    - 1) 고객 이름과 주소
    - 2) 체납 금액
    - 3)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납부금이나 납부약정날짜,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의 재량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고지서가 체납이 된 날짜로부터 60일로 정한다
    - 4) 체납요금을 납부하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5) 고지서 재고와 항소를 청원하는 절차의 설명

- 6) 고객이 체납된 주거용 수도요금의 할부상환을 포함하는 납부연기, 인하, 별도납부일정을 요청하는 절차의 설명
- 7) 시정부의 전화번호와 시정부 방침의 웹사이트 링크

**5. 성실한 통보 요건**

- A. 시정부가 고객이나 건물에 거주하는 성인과 전화로 연락이 안되고, 통지서가 배달이 불가능하여 돌아온 경우, 임박한 수도서비스 중단 통지서와 시의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 중단 방침을 거주지에 찾아가서 두고 오거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할 준비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 B. 고객이 고지서의 재고나 항소를 바라면, 고객은 납부마감일 전까지 시정부에 연락하고 시정부가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서 고객이 납득할만한 해결이 나오지 않으면, 고객은 경리부장의 재고를 신청하고 추후 시 관리인에게 항소해도 된다. 항소가 대기 중이면 시정부는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6.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 금지**

- A. 다음 조건에 전부 부합되면 시정부는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 1) 수도 공급 중단이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에 사는 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면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는 복지제도법 14088항의 (b)관 (1)문단 (A)항으로 정의된 용어인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다.
- 2) 지역구의 정상 청구주기에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증명한다. 고객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이 지역구의 정상 청구주기에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 3) 고객은 체납요금에 대해 분할납부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 인하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B. 상기 A항에 나온 조건에 전부 부합되면,시정부가 선택한 다음중 한가지 방법이나 이상을 시정부는 고객에게 제안한다.

- 1) 미납잔액의 할부상환
- 2) 별도납부일정에 참여하기
- 3) 요율납부인에게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미납잔액의 일부나 전액 할인
- 4) 임시 납부연기

- C. 최고채무책임자나 대리인은 고객이 이행할 6문단에서 규정된 납부방식을 선택할 권한이 12개월동안 잔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방법의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 또한 시의회가 승인한 다른 수익으로 납부인하를 지원하고 허가하는 목적으로만 수도사업기금 예산으로 이체하는 경우, 최고재무책임자는 미납잔액의 일부나 전체 인하를 승인할 수 있다.

D. 다음 중 한가지 상황에서 시정부가 건물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최종 의도 통지서를 게시한 후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5영업일 이후에 중단될 수 있다.

- 1) 고객은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나 인하약정을 90일 이상 준수하지 않는다.
- 2)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나 인하약정을 이행하면서, 고객은 현재 주거용 수도요금을 9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 7.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복구

A. 시정부가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면,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퍼센트보다 적다고 증명한 주거용 고객에게, 시정부는 다음 두 가지를 해야한다.

1) 정상영업시간에 서비스를 복구하면, 이십오 달러(\$25)까지 또는 재연결한 실제 비용 중에서 더 적은 액수로 서비스의 재연결 비용을 정한다. 정상영업시간 이후에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재연결하면, 시정부는 백오십 달러(\$150)를 초과하지 않거나 재연결한 실제 비용 중에서 더 적은 액수로 재연결 비용을 정한다.

2) 12개월에 한번씩 체납고지서의 이자를 전부 면제한다.

B. 고객의 가족원이 캘웍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이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간주한다.

## 8. 주인-세입자 관계와 관련된 서비스

A.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 등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공급하고, 주택, 구조물, 공원의 건물주,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인 경우, 시정부는 종료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실을 주거용 고객에게 문서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통지서에서 주거용 입주자들이 체납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객이 될 권리가 있고, 그러면 서비스를 청구받게 된다고 알려준다.

B. 유닛마다 최소한 주민 한 명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법과 지역구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시정부는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모빌홈파크의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거용 세입자 한 명 이상이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후속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거용 신청인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시의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정부가 만족할만큼 서비스 약관에 부합하는 사실을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요건이 있고, 혹은 시정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거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종료하는 물리적 방법이 있는 경우, 시정부는 서비스 약관에 부합하고 시정부가 만족하는 주거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

9. **보고요건:** 시정부는 납부 불능으로 주거용 서비스가 중단된 수를 웹사이트와 주정부 수도자원통제국에 매년 보고한다.
10. **이 방침의 제한:** 이 방침의 어떤 내용도 이 방침에 분명히 서술한 것 외에 다른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종료할 지역구의 역량을 구속하고, 제한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치지 않는다.
11. **수도위반항소:** 델라노 지방정부법 13.05장(수도위반항소)에 의거하여 고객이 수도고지서를 분쟁하고 항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항소가 대기 중이면 시정부는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침은 델라노 웹사이트에 나오게 된다. 시정부의 공과금 청구부서는 이 방침의 약관에 의거하여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종료를 피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전화 661-721-3315 혹은 이메일 [utilitybilling@CityofDelano.org](mailto:utilitybilling@CityofDelano.org))로 연락하십시오.